

#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2 . 2 김진석의원외 3인

나. 회부일자 : 2000. 2. 10

다. 상정일자 : 제7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조례특위(2000.2.10)  
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진석의원)

가. 제 안 이 유

○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 요 내 용

○ 조례명칭상 「회의수당」을 「회기수당」으로 변경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○ 지방의회 운영제도 개선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문제점이 없음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임: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부 . 끝.